

I

추진배경 및 경과



1 추진배경

-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해 **정부신뢰 저하 및 대외신인도 하락** 우려
※ 일반국민의 62.8%가 우리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('14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)
-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(형법, 공직자윤리법 등)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를 위한 **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**
-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의 행위규범과 기준을 구체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**부패예방시스템** 구축 필요

2 추진경과

- 국무회의 '공정사회 구현, 국민과 함께하는 청렴 확산방안' 보고 시 입법 필요성 제기('11.6.14)
※ 공개토론회('11.10월, '12.2월),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 연구('12.4월~7월), 광주·대전·부산 등 권역별 대국민 법안 설명회 개최('12.4월~5월) 등
- 정부입법절차 진행('12.5.7~'13.7.30)
 - 관계기관 의견 조회·협의, 입법예고, 차관회의, 국무회의 의결
- 정부안 국회 제출('13.8.5)
-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('15.1.12)
-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('15.3.3)
- 국무회의 의결('15.3.24)
- 공포('15.3.27), 시행('16.9.28)